



문서번호 : 16-02-미군문제-03
수 신 : 각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담당 : 장연희 사무차장,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송일자 : 2016년 2월 19(화)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 17매

[보도자료]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이하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2016. 2. 18.에 서울종로경찰서장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시위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11:00경 광화문광장에서 사드배치반대 기자회견을 한 후에 미대사관 앞 인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려고 하였는데, 서울종로경찰서는 '비엔나협약 제22조에 따라 미대사관 앞 1인시위를 불허한다'면서 물리력으로 1인시위를 하려는 민변 미군위 위원장의 미대사관 정문 앞으로의 이동을 방해하였고 광화문 KT건물 복단까지 밀어냈습니다.
4. 그러나 우리 국민은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1인시위를 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미대사관 정문 앞 인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입니다. 1인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에는 1인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5. 그리고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근거로 들며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동법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도상에서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가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6. 경찰의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는 2016. 2. 17.과 18.에도 이어졌습니다. 민변 미군위는 2016. 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 2. 17. 조사에서 경찰에게 미대사관 앞 인도 끝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찰은 그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위법한 공권력 집행을 반복한 것입니다.
7. 이에 민변 미군위 소속 변호사 5명은 경찰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앞으로도 같은 침해 행위가 반복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고 1인시위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1인시위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유사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8.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 방해 행위의 위법성은 이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오히려 명백한 불법행위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9. 이에 보도자료를 보내드리고 취재를 요청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가처분신청서 및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 **첨부2.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6. 2.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첨부1.

1인시위 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1. 하주희
2. 김종귀
3. 남성욱

위 채권자들의 주소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

4. 김진형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6층(서초동, 해동빌딩)

5. 김자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6길5 하림 1차빌딩 201호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김유정, 오현정, 오민애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6층(우 : 137-881)

전화 : 02-582-0606, 팩스 : 02-596-8004

채무자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현웅

2. 흥완선

서울 종로구 을곡로 46 종로경찰서 서장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 앞 인도에서의 1인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제1항 위반시마다 각 채권자에게 1회에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모두 부담한다.
-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 하주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이고, 채권자 김진형은 같은 위원회 간사이며, 나머지 채권자들은 같은 위원회 회원들입니다.

채무자 홍완선은 서울종로경찰서장이고, 채무자 대한민국은 채무자 홍완선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2. 권리침해 사실의 존재

가. 1인시위를 하게 된 경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라고 합니다) 미군문제연구위원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회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가 국민들의 헌법상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나는 규범적 문제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2016. 2. 16.부터 2016. 2. 29.까지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채권자 하주희의 1인시위 방해 사실

채권자 하주희는 2016. 2. 16. 11:00경 광화문광장에서 민변 회원들과 1인 시위를 시작하는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소갑 제1호증 2016. 2. 16.자 뉴스원 기사 “민변, 사드배치 반대 기자회견” 참조), 기자들의 요청에 의해 광화문광장에서 사진촬영을 한 후에 미국대사관 정문 앞 인도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홍완선의 지휘를 받는 경찰공무원들은 미국대사관 정문에서 약 20미터가 떨어진 곳(소갑 제2호증 미국대사관 인근 지도에 A로 표시된 곳)에서 채권자 하주희를 막았습니다.

채권자 하주희는 ‘1인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집회나 시위가 아닌데도 미국대사관 정문 앞 인도에서의 1인시위를 막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채무자 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몇 분 후에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은 방송차량으로 “‘비엔나협약 22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를 불허한다.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방송하였습니다.

위 방송 직후에 채무자의 지휘를 받는 경찰공무원들 다수가 채권자 하주희의 몸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위 지도(소갑 제2호증) 상의 B지점(KT건물 북단)까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지 밀어냈습니다.

(이상 소갑 제3호증 2016. 2. 16.자 뉴스원 “민변, 사드 배치반대 1인시위 도중 경찰과 실랑이”, 소갑 제4호증의1~6 각 2016. 2. 16. 사건 당시 동영상 참조)

다. 채권자 김진형의 1인시위 방해 사실

채권자 김진형은 2016. 2. 17. 12:20경부터 미국대사관 정문 앞 인도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채권자 김진형이 1인시위를 시작하자마자 채무자의 지휘를 받는 다수의 경찰들이 ‘미국대사관 앞에서는 1인시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1인시위를 하라’며 채권자 김진형의 1인시위를 방해하였고, 1인시위를 시작한지 약 5분만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방송차량을 가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시위를 불허하겠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즉시강제하겠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하였고, 그 직후에 채무자의 지휘를 받는 약 20명 경찰들이 채권자 김진형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지도(소갑 제2호증) B지점까지 밀어냈습니다.

(이상 소갑 제5호증의1~6 각 2016. 2. 17. 사건 당시 동영상 참조)

라. 채권자 김종귀의 1인시위 방해 사실

채권자 김종귀는 채권자 김진형에 이어서 1인시위를 하였습니다. 채권자 김종귀는 피켓을 들고 미국대사관 정문 앞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경찰들은 위 지도 B지점에서부터 채권자 김종귀를 가로막았습니다. 채권자 김종귀가 미대사관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정문 방향으로 가려고 하자 경찰들은 완전히 둘러싸는 방식으로 고착하였습니다.

마. 채권자 해주희, 김자연의 1인시위 방해 사실

2016. 2. 18. 12:00부터 채권자 해주희, 김자연은 순차적으로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고 하였는데, 채무자 측은 위 지도 B지점에서부터 위 채권자들의 이동을 막는 방식으로 1인시위를 방해하였습니다.

바.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는 다원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전제입니다. 1인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 행위이므로, 국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장소·방법에 따라 1인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1인시위를 진행하려는 곳은 미대사관 정문 앞 인도입니다.
블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입니다.

채무자는 비엔나협약 제22조에 근거하여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의 1인시위는 금지한다고 하였으나, 동 협약 제22조는 “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들은 미국대사관 안에 들어갈 의사 자체가 없었으므로, 위 협약은 채권자들의 1인시위를 방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없는바, 결국 채무자는 법적 근거 없이 채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대사관 정문 앞 인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채무자의 주장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근거하여 채권자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동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자들은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불안과 대립을 부르는 사드 배치는 위헌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양손으로 들고 있었을 뿐이므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는 전혀 없었는바, 위 법 제6조에 근거하여 채권자들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지휘를 받는 경찰공무원들이 채권자들의 몸을 밀어낸 행위는 위법한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침해로 판단하고 종로경찰서장 등 1인시위 제지 관련자에게 인권교육 권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소갑 제6호증 2003. 4. 1.자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3. 보전의 필요성

가. 권리침해가 계속 될 상당한 개연성

2016. 2. 16. 14:30경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엔지오 담당관은 채권자 하주희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동 담당관은 '종로경찰서의 행위가 과한 것으로 생각되고 내일부터 1인시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종로경찰서와 협의하겠다'고 하였는데, 같은 날 16:45경 '종로경찰서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 하주희는 2016. 2. 16. 17:30경에 "진정인 : 하주희", "피해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피진정인 : 종로경찰서장"으로 특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2016. 2. 17. 14:30에 진정인 측에서는 채권자 하주희가, 피진정인 측에서는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선례에 비추어 긴급구제가 인용될 것'이라고 채무자 측에게 말하면서 1인시위 방해 행위 중단을 권고하였습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2016. 2. 18. 오전 중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오전 10시경에 '앞으로도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 채권자 하주희, 김자연의 1인시위를 방해하였습니다.

채무자는 2003. 4.에 유사한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판단을 받고 인권교육 권고까지 받았고, 2016. 2. 17.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진정 조사 과정에서도 긴급구제가 인용될 것이라는 점을 통보받고 나서도 1인시위 방해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변호사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들로서 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관한 합리석 해석에 기초하여 채무자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1인시위는 불허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향후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채권자들의 1인시위를 방해할 개연성이 농후합니다.1)

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대사관 정문 앞 인도에서의 1인시위는 2016. 2. 16.부터 29.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본안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채무자의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침해 행위가 긴급하게 억제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들은 항의의 대상인 미국의 주한대사관 정문 앞에서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4. 간접강제 신청

채무자는 민변 미군위가 2016. 2. 29.까지 1인시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2016. 2. 29.까지만 막으면 된다’는 판단 하에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위반하여 채권자들의 1인시위를 방해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채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인시위를 방해하고 있는 점도 그러한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가처분 결정 위반 행위를

1) 채권자 남성욱은 2016. 2. 19. 12:00경부터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를 할 예정인바, 채권자 남성욱의 권리침해가 충분히 예상되어 채권자로 특정하였습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억제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의 간접강제가 필수적입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으니, 신청취지와 같이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2016. 2. 16.자 뉴스원 기사 “민변, 사드배치 반대 기자회견”
1. 소갑 제2호증 미국대사관 인근 지도
1. 소갑 제3호증 2016. 2. 16.자 뉴스원 “민변, 사드 배치반대 1인시위 도중 경찰과 실랑이”
1. 소갑 제4호증의1~6 각 2016. 2. 16. 사건 당시 동영상
1. 소갑 제5호증의1~6 각 2016. 2. 17. 사건 당시 동영상
1. 소갑 제6호증 2003. 4. 1.자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첨 부 서 류

- | | |
|---------------------|------|
| 1. 위 소명방법 | 각 1통 |
|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 1통 |
| 1. 송달료납부서 | 1통 |

2016. 2. 18.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채권자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김 유 정

오 현 정

오 민 애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첨부2.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7 /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육성철(sixman@humanrights.go.kr)

<보도자료>

2003년 4월 1일(실무담당자 : 인권침해조사1과 박달경 조사관 2125-9822)

"외교공관 앞 1인시위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위, 종로경찰서장 등 집회 제지 관련자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유모씨(남·43세)가 2002년 8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소재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앞 인도에서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반대’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던 도중 경비중인 경찰로부터 체재를 받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2002년 9월 시위 당시 경비책임자인 종로경찰서장과 동경찰서 경비과장 및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나모 경감 등을 상대로 진정인 사건에 대해, 피진정인들에게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 유모씨는 2002년 8월 30일 12시15분경 평상복차림으로 미대사관 정문에서 남쪽으로 약 4~5m 떨어진 인도에서 피켓(90cm×60cm)을 들고 평화적으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현장경비업무를 수행 중이던 전경 4~5인이 “일반인의 통행 및 미대사관 업무수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위장소를 미대사관 정문에서 15m 가량 떨어진 남쪽 모퉁이로 옮길 것”을 요구했으며, 유모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경비책임자인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나모 경감은 △‘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협약) 제22조를 근거로 “미대사관 정문 앞 1인 시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수차례에 걸쳐 장소 이동을 종용하고 △사정이 여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의치 않자 다수의 전경을 동원, 방패로 유모씨를 미대사관 남쪽 모퉁이로 밀어냈으며 △유모씨가 재차 정문 쪽으로 이동하려 하자 10여명의 전경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1인시위 제지와 관련, 미대사관 경비책임자인 종로경찰서장은 △미대사관 정문 앞 인도는 폭이 2.5m에 불과하고 일반시민 등의 출입이 잦아, 시위자가 피켓 등을 갖고 있을 경우 통행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고 △반미시위대의 화염병·오물 투척 및 월장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기 때문에 유모씨를 미대사관 남쪽모퉁이로 이동시킨 것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종로경찰서장은 진정한 유모씨에 대한 조치가 비엔나협약 제22조 제2항(‘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및 제29조(‘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와 국내법인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등을 고려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는 다각도의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의 의견과 1인시위 관련 판결 및 외국의 사례 등도 참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 내용과 판단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정한이 1인시위를 벌였던 미국대사관 앞 인도는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평소 일반시민의 통행이 드문 반면 미대사관의 경비를 위해 배치된 경찰기동대 차량 및 대원들의 밀도가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진정한의 1인 피켓시위가 일반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며,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미대사관 주변은 반미시위대의 화염병 투척 등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공관보호를 위해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하지만, 진정한은 시위의 목적이 명확한 피켓을 들고 혼자서 조용히 서 있었을 뿐 공관에 위해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셋째, 진정인의 1인시위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 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행하는 집시법상의 ‘시위’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시법상 시위금지 와 관련된 조항(예 : 국가기관·외국공관 등의 경우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진정인이 통행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경범죄처벌법의 조치대상도 아닙니다.

넷째, 비엔나협약 제22조는 접수국에게 공관의 보호를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과 하고 있고, 동 협약 제29조는 외교관에 대한 불가침권과 신체·자유·품위에 대한 침해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공관 부근에서의 1인시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은 유 모씨의 1인시위를 단속한 이유로 △단순히 시위장소가 미대사관의 업무수행에 방해 를 줄 수 있고 △최근 미대사관이 위협받은 시위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었을 뿐입 니다. 결국 피진정인들은 유모씨의 1인시위가 구체적으로 미대사관에 어떠한 위협 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비엔나협약 제1조에 규정된 ‘공관지역’은 ‘소유자 여하를 불문하고, 공관 장의 주거를 포함해 공관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건물의 부분 및 부속토지’ 를 말합니다. 하지만 유모씨의 1인시위 장소는 비엔나협약에서 규정한 공관지역이 아니고, 유모씨는 외교법상 불가침을 인정받고 있는 미대사관의 경계를 침범하지 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유모씨의 미대사관 정문 앞 1인시위가 국내 법 위반 또는 비엔나협약에 따른 경찰의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섯째,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미대사관 정문에서 약 15m 정도 떨어진 대사관 남쪽 담장 모퉁이로 유모씨를 밀어내고 그곳에서 시위를 하도록 허용한 점에 대 해 검토했습니다. 이와 관련 유모씨가 애초에 원했던 시위장소는 아니라 해도 주 변 통행인들에게 시위의 목적을 알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 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 의 전제이자 다른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법 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장돼야 합니다. 따라서 유모씨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시 위의 시간·장소·방법 등이 국내법이나 비엔나협약 등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공권력 등에 의해 변경 또는 훼손됐다면, 유모씨는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유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또한 유모씨가 원하는 장소에서 시위하려는 행위를 경찰이 부당하게 억압·방해했다는 점에서, 유모씨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당한 것입니다.

끝.

< ‘1인 시위’ 관련 판결 및 각국 사례 등 >

- 청와대 앞 1인시위 불법연행에 대해 위자료 500만원 배상판결(서울지법 2002.11.7.선고, 2001가단293367판결, 현재 2심계류 중)
- 미이라 복장 1인 시위 경범죄로 3만원 선고 (대법원 2002.7.12.선고, 2002도 1727판결)
- 대한항공의 부당해고관련 1인시위금지 가처분판결(서울고법 2003.2.18.선고, 2002나42553판결)
- 외교공관 앞에서의 1인시위 행위가 비엔나협약의 외교공관보호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의견
 - 현행 국제협약상 공관의 안녕·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법률적으로만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돼야 할 것임.
- 외교공관보호와 관련한 각국의 입장
 - 미국은 ‘외국 공무원 및 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공무원, 국민 및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인물에 대하여 폭행·상해·감금 등 신체 혹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이러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이 미국주재 외국 외교·영사공관의 100피트 내에서 집회를 개최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외교공관 부근의 시위와 관련하여, 거리·인

※ 이 전문은 위에서 정한 수신인만 받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귀하가 지정된 수신인인 아닌 경우 위의 전문내용을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개, 복제, 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전문이 잘못 수신되거나 수신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위에 기재된 연락처로 즉시 연락을 바랍니다.

원 등에 대해 명확한 범규를 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시위가 개최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엔나협약상의 공관보호와 자국 헌법상의 언론·집회의 자유간의 균형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